

# Underwriting

윤 동 혁  
(서울동부지부장)

## 1. 머리말

보험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즉 위험을 인수하는데 있으며, 각출된 보험료를 가지고 재투자 운영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모든 위험을 무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을 인수하는데는 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을 선별(계약 거절, 한도 인수 등), 인수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시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에 출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유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자기의 계산에 따라 Risk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Risk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의 책임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도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자사 위험관리(위험 분산)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2. Underwriting의 의의

보험자의 경영 활동은 각 기능 부문이 종합적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특히, Underwriting은 보험사업 경영상의 기능으로 보아 보험요율의 산정·Marketing·자산운용

및 손해사정과 같은 다른 여러가지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거나, 과소평가를 하더라도 이들 다른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Underwriting 이외의 다른 기능은 외부의 전문기관을 활용·이용할 수 있으나 Underwriting부문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보험회사 사업의 본연의 목적은 위험(Risks)를 인수하는데 있다. 보험회사에서 인수할 만한 Risk인가 또는, 거절하여야 할 Risk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곧 Underwriter이다. 이 Underwriter의 명칭은 여러가지 직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보험요율을 검증하는 사람 또는 보험계약의 인수를 일상 업무로서 하는 사람도 Underwriter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Underwriter는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영업종목의 Risk를 인수하거나 거절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Underwriting의 실제와 유능한 Underwriter의 기본적 특성의 개요를 설명 하고자 한다.

### 가. 선택능력

Underwriting의 목적은 본질적으로는 선택하는데 있다. 화재보

험의 Underwriter의 직무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소실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Risk 등을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있으나, 이와같은 단정적 선택은 불가능하므로 엄격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된다. Underwriter는 또한 회사의 경영방침상 목표를 정하고 있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위험집단(Porffolio of Risks)을 자기회사 계약으로 보유할 수 있게끔 일정한 기준내에 들어가는 Risk를 선택하고, 기준에 들지 않은 Risk는 거절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각 Underwriter의 기본적 Underwriting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1) 경영자가 결정한 경영방침을 영업성적에 구현시키기 위하여, 영업보험종목·영업지역·Risk의 수준 및 분류 보유와 재보험Programme·인수범위·인수최대한도액·인수제한·인수금지 Risk·영업 기본방침 책정 및 보험종목의 비중 구성에 의한 경영안전 계획 등을 설정한다.

(2) Underwriting Staffs는 개별적인 계약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소정의 인수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보유와 재보험 Corer에의 영향도를 고려하면서 검토한다.

#### 나. Underwriting 방침

보험경영상의 첫째 목표는 Risk의 인수에 있으나, Risk선택의 첫 단계로서 Underwriting 방침을 제정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Underwriter는 이 방침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발언권이 있다. Underwriting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경영자는 경영목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영목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에 큰 비중을 두고 이익은 최소 또는 적자경영이익(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투자수익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으로 하는 경우와 또는 경영이익은 커지나 상대적으로 보험료의 금액은 적은 경우에 따라 각기 Underwriting 방침에 큰 차이가 생긴다.

Underwriting방침상의 결정사항은 회사의 전조직에 골고루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전술한 일정 기준을 세밀하게 제정해 놓으므로 Underwriting방침을 경영의 제일선(대리점을 포함함)에 골고루 알려져 계약시의 선택이나 또는 그 후의 Underwriting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보제공의 협력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다.보험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

Underwriting에 있어서는 그 결정사항이 항상 일정 불변의 것은 아니다. 즉, 회사의 내용·사회환경·보험수요·보험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Underwriting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Underwriting은 기술적으로나 숙련도에 있어서도 항상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Underwriting부문에서

Risk를 인수할 때에도 항상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Underwriting부문에서 Risk를 인수할 때에 간혹 부주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요율구성 또는 재무상에도 영향을 미쳐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손상케 하고 나아가서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Underwriter는 필수불가결의 존재인 것이다.

보험요율 산정시에 당연한 것으로 추측되었던 손해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거나 이익률의 폭이 적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Underwriting부문에서는 Risk를 인수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거나 어떠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Underwriting부문에서 계약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너무 엄격한 방침을 내세우면 영업은 다른 경쟁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너무 자유방임한

Underwriting방법을 취하면 손해사정부문에서 문제가 생긴다. 즉, 손해사정을 한층 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거나, 그 결과로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된다. 보험회사의 각 부문별 기능 목적은 반드시 병존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영업부문에서는 자유스럽고 폭넓은 Underwriting과 손해사정을 바라고 있고,그 반면 Underwriting부문에서는 영업부문을 비판하며 첫 단계의 Underwriting(대리점에서의 Underwriting 포함함)에 대하여 Underwriting 방침을 무시한 점을 비난한다.

Underwriting과 영업의 이 양자간을 조정하여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Risk가 탄생한다. Underwriter 역시 회사의 양적 발전을 고려하고 또 자신의 생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강력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상황여하에 따라 압력을 받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Under-



writer의 판단이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망각하여서는 안되며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3. Underwriting의 실제

#### 가. Underwriting기능

Underwriter는 Risk의 불확정성(손해 발생의 가능성: 발생빈도 및 그 규모)에 대하여 개개의 Risk를 평가·조사·판단하는데에 숙달되어 있고, Risk의 선택과 분류를 행하여, 그 계약인수의 안정성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이다.

Underwriting 그 자체는 보험회사의 본사에서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기능은 아니다. 영업부문에서도 Underwriting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현실적인 Underwriting에 관한 것은 물론이며 Risk의 변화 경향·사회환경의 변화 및 시장추세 등에 관한 정보를 영업부문에서도 보고하며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Underwriting 그 자체는 보험회사의 본사에서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기능은 아니다. 영업부문에서도 Underwriting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현실적인 Underwriting에 관한 것은 물론이며 일반 Risk의 변화경향·사회환경의 변화 및 시장추세 등에 관한 정보를 영업부문에서도 보고하며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Underwriting의 정확도를 높이고 또한, 회사의 Underwriting방침을 널리 주지시키기 위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Underwriter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기준을 정한다.

(1) Underwriting정책의 기본 확립

① 재정적 능력...인수능력은, 최종적으로는 회사의 자산에 따라 정한다.

② 영업방식...대리점의 관리·지도·직급-계약담당사원의 관리권한의 범위

③ 경험의 활용...정책결정을 위한 경험 Risk의 판정, 통계자료의 활용, Code표의 활용-일반 타산업의 경험과 보험사업 경영과의 비교연구상의 경험

④ Risk의 분류...물건의 판단기준상의 분류

(i) 우량 물건

(ii) 인수 가능 범위

(iii) 인수 규제상의 기준

(iv) 인수하기를 꺼리는 Risk

(v) 거부하는 Risk

(vi) 대리점에서의 계약 인수에 관하여 개개의 대리점과의 약정·계약내용을 협력해서 작성

(2) 효율산출의 확립

(3) 계약내용·조항의 작성·연구 및 준비

(4) 보유기준과 재보험 programme의 연구 및 제정

(5) 인수계약의 검토

Underwriter는 청약을 받는 Risk만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Risk의 정보원은 대리점이나 계약담당사원이다. 이들 계약 체결에 종사하는 자가 회사의 Underwriting 방침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을때 계약 교섭시에 Underwriter의 선택업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편해

진다. 이에 반해서 만약 회사의 인수기준에 맞지 않는 Risk를 계약담당자가 인수하고 있으면 Underwriter가 만족할 수 있는 Risk집단을 형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제아무리 숙련된 Underwriter라도 불충분한 정보원을 가지고 양호한 계약의 Portfolio를 구성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 나. 도덕위험(Moral Hazards)

(1) 심리적 위험

재물상의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이익-보험계약자가 부보물건이 손해를 받음이 없이 안전하게 존재할 것을 강하게 회귀하고 있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부보물건이 소멸되는 것을 원한다면 계약자의 목적과 보험자의 목적은 반대의 입장이 된다. 여기에 바로 Moral Hazard가 존재하게 된다. 즉 부보물건이 파괴 또는 손상을 입는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는 실태위험(Physical Hazards)이외에 다른 어떠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Moral Hazards는 경제적 Cycle의 모든 현상에 거의 모두 관련이 있다. 경제적으로 경기변동의 변형시대에도 생기는 하나 Moral Hazards는 불황시대에 분명히 증가한다. 이것은 경기변동의 영향에는 개별적으로나 업종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Moral

### 4. 선택적 Underwriting에 있어서의 일반적 주의



가. 보험자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오는 고요율의 경우—보다 더 자유스럽게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Hazards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요율로서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심지어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만약, Moral Hazards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요율적용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숙련된 Underwriter는 Moral Hazards의 존재의 양상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Moral Hazards의 존재가 재물을 손괴시킬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Underwriter의 일은 평균치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항상 손실을 내고 있는 Risk 집단과 이익을 내는 Risk 집단을 비교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전자의 집단에 많은 화재손실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나. 저요율의 경우—보험자는

손해발생의 기회와 손실의 크기가 평균치보다는 적은 물건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물건만을 인수하는 경향이 보험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요율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손해율을 수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려깊은 인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모든 요율이 개개종목에 대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개의 Risk에 대하여도 역시 엄격히 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요율은 종목 또는 Risk의 평균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우량한 Risk에 대한 요율은 최저수준까지 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Risk에 대하여는 충분히 확보하기가 결코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요율은 인수가능한 최소한도내 까지만 인수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 이상손해(Catastrophe Loss)는 영업 성적상 최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에 대하여는 제한된 범위내에 한해서만 예측할 수가 있다. 화재의 확대요인이 중복되면 화재가 생기기 쉽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언제인가는 모르고 있다.

## 5. 맺는 말

유능한 Underwriter는. Moral hazards나 특정한 실태위험이 있는 Risk를 가려낼 수 있는 훌륭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판단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보험의 기본을 이해하고, 일상업무를 통해서 각종의 다양한 정보를 보험자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Underwriter가 인수하는 모든 Risk는 표준 이상이거나 또는 그 이하의 것이지 결코 표준에 부합되는 것은 드물다. 보험자의 궁극의 목적은 비록 표준 이하의 Risk를 담보하여 안정된 이익을 올리는데 있다. 어느 하나의 위험 집단에서 양호한 Risk가 표준 이하의 Risk로 인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한 Pool 작용이나 평균화는 가능해진다. Underwriter의 책임은 열등적인 Risks를 수적으로 불균형하게 인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는데 있다. Underwriter의 또다른 책임은 열등적 Risk로서 분류된 것 중에서 양호한 Risks를 선별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손해가 예측한 손해를 초과하여 더욱이 재보험 출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Underwriting활동이나 기본 영업방침에 대하여 불신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